

국립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 간의 복수학위협정서(DUAL DEGREE AGREEMENT)

국립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이하“국어국문학과”)와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이하“대만문학연구소”)는 상호 신뢰의 원칙 하에 복수학위 학생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1. 총칙

- 1.1. 본 협정서는 국어국문학과와 대만문학연구소와의 복수학위(Dual Degree) 제도 운영을 위한 협정서이며, 석·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교류를 대상으로 한다.
- 1.2. 양교는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학위 과정 학생을 선발한다.
- 1.3. 양교에서 정하는 졸업 기준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파견 시에는 초청 대학의 학사제도를 따른다.
- 1.4. 양교는 파견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소정의 학위청구 논문 절차에 따라석,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1.5. 양교는 성적 또는 학위논문 심사 결과 통보 등 학위취득에 필요한 행정 사항에 양교의 학사제도와 일정을 존중하여 상호 협조한다.

2. 학생 선발 및 파견

- 2.1. 복수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수학 능력이 우수한 자로 소속 대학에서 선발하여 추천하고 초청 대학에서 확정한다.
- 2.2. 복수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언어 자격 요건은 국어국문학과에 파견되는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 대만문학연구소에 파견되는 학생의 경우 華語文能力測驗(TOCFL) 4급 이상으로 한다. 단, 선발된 학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교에 소속된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 2.3. 초청 대학에서는 추천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
- 2.4. 양교는 학생들의 선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 비자를 위한 서류, 그리고 학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초청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
- 2.5. 양교의 학생 파견 기간은 최소 1년(두 학기)으로 하며, 파견 시기는 부산대학교의 경우 3월 또는 9월로, 정치대학교의 경우는 2월 또는 8월로 한다.
- 2.6. 양교의 파견 학생은 상호 간 동일 인원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과정 및 학사지도

복수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각 대학별 학칙에 의거한 제반 졸업요건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 3.1.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위 수여 조건 (부산대학교에 파견된 정치대학교 학생에 해당)
 - 3.1.1. 석·박사 과정 모두 정규과정 최소 두 학기(1년)를 수학해야 한다.
 - 3.1.2. 수학 기간 내 석사 12학점, 박사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3.1.3. 석사과정 학생은 최소 한 차례 국가 제한 없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포스터 발표 포함)를 하거나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거쳐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제도가 있는 양국의 학술지(한국의 경우 KCI 등재지 후보지 이상) 중 한 곳에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3.1.4.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졸업논문에 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규정을 따른다.
- 3.2. 대만문학연구소 학위 수여 조건 (정치대학교에 파견된 부산대학교 학생에 해당)
 - 3.2.1. 석·박사 과정 모두 정규과정 최소 두 학기(1년)를 수학해야 한다.
 - 3.2.2. 수학 기간 내 석사 12학점, 박사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3.2.3. 석사과정 학생은 최소 한 차례 국가 제한 없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보고서를 제출하며,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제도가 있는 양국의 학술지(한국의 경우 KCI 등재지 후보지 이상) 중 한 곳에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3.2.4. 논문계획서 심사, 외국어시험, 졸업논문에 대한 사항은 정치대학교 규정을 따른다.

- 3.3. 양교는 파견 학생의 학업과 논문지도 등을 담당할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 3.4. 양교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교와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 3.5. 학생은 반드시 상대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상대교의 학생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학위논문

- 4.1. 학위논문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위 수여 논문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양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 4.2.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은 1편을 작성하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양교에서 각각 심사한다. 양교 모두 복수학위 신청자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협정대학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협정 대학 교수의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4.3. 학위논문을 자국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정교의 언어로 된 요약본을 제출한다.
- 4.4. 각 대학별 학위취득 요건과 복수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하면 양교의 총장은 문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복수학위 과정의 졸업증서, 수료증서 및 학위기는 각 대학의 복수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의거한다.

5. 등록 및 비용

- 5.1. 학생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최소 1년(두 학기)을 초청 대학에서 수학 하되, 학위 과정 최종 학기에는 소속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 5.2. 학생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초청 대학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5.3. 초청 대학은 학생이 숙소를 정하는데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며, 숙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5.4. 등록금 이외 기타 비용(기숙사비, 논문심사비, 식비, 여비, 교재비, 교통비, 증명서류 비용, 비자 비용 등)의 지출비용은 학생 개인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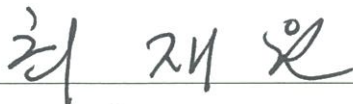
6. 부칙

- 6.1. 본 협정서는 양교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일 한 학교에서 협정을 종료하고 싶으면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지해야 하며, 한 학교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이 협정은 종료된다.
- 6.2. 본 협정서에 미진한 부분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보충 협의와 본 협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6.3. 본 협정을 집행 중에 양교가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쟁론, 이의 및 분규는 양교의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
- 6.4. 본 협정서는 한글과 중국어 각 2부로 하며, 양교가 각각 한글과 중국어 1부씩 보관하며,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부산대학교

총장

최 재 원



서명일 : 2025.10.31.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과장

김 태 우



서명일 : 2025.11.5

국립정치대학교

총장

이 채 언



서명일 : 2025.11.20

국립정치대학교

문학원 대만문학연구소 소장

최 말 순



서명일 : 2025.11.5